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4. 11.
보건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9. 3. 전진숙의원 등 15인

나. 회부일자 : 2024. 9. 4.

다. 상정 및 의결 일자 :

-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(2024.11.14.)

상정

-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024.11.19.)

상정, 의결(대안반영 폐기)

-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(2024.11.21.)

상정, 소위심사보고, 의결(대안반영 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전진숙 의원)

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,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,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음.

이러한 평가제도는 현행법과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모자보건법」

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, 평가기관이 다양하며, 평가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자료, 결과 등을 통합적·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수석전문위원: 이지민)

□ 개정안과 같이 의료 질 평가제도를 통합·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의료 질에 대한 평가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하며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의료 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또한,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의 평가정보 보고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다면 의료기관들의 행정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고, 평가지표의 공동활용을 통해 평가기관들의 평가 효율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□ 다만,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‘관계

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'으로 규정하고 있어, 평가 수행기관¹⁾이 자료 요청의 대상이 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음.

또한, 의료기관의 규모와 각 평가의 목적 및 시기가 상이하므로, 평가 결과를 통합·연계하는 과정에서 정보 왜곡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절한 비교 기준을 설정하고,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생략

5.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: 강선우 의원)

대안을 제안하고,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.

6. 심사결과

대안을 제안하고,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.

1)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의료기관 평가인증원,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, 국민건강보험공단,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, **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 본부**,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,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, 서울대학교병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등